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468 제 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2200115)	2024.6.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9.2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이만희의원 (2200142)	2024.6.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9.2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민형배의원 (2200920)	2024.6.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9.2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2200663)	2024.6.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9.2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민형배의원 (2200944)	2024.6.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4.9.2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정을호의원 (2200967)	2024.6.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4.9.24)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9.24.)는 위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5.)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 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 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법률 제 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 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
	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
	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
	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
	(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
	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
	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
	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